

2016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2016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 사항

- 가. **(신체조건 변경)**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23조7항(신체조건) 개정
 - 기존 : 흉위 조항 및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변경 : 흉위 조항 삭제 및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변경)**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제19조2항, 제24조 개정
 -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6 가산특전 및 [붙임6] 참조)
- 다.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서류전형 시험일, 체력검사,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날짜 변경**
 - 기존 : 필기시험 장소(3.17), 체력(5.25), 신체(5.25), 서류전형(5.27)
 - 변경 : 필기시험 장소(3.21), 체력(5.13), 신체검사(5.24), 서류전형(5.26)
- 라. **구급(경력)분야 응시자격 중 응급구조사 2급 제외**
 - 기존 : 응급구조사(1급, 2급) 또는 간호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변경 :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마. **운전분야 응시자격 중 제1종 특수면허 및 군 경력 제외**
 - 기존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하나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 변경 :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채용예정계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시간	
합 계		11개 분야	174명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지방소방사	소방	남자	97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여자	5	선택(2)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남자	3	필수(2) 선택(1)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3과목 (60분)

지 방 소방교	구급상황 관리사 (전 산)	남자	1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급상황 관리사 (구 급)	여자	5	
	구 조 (수 난)	남자	1	
	구 조 (일 반)		15	
	구 급 (경 력)	남자	18	
		여자	2	
	특수 차량정비	남자	3	
	운 전	남자	15	
	소방관련학과	남자	7	
	도립대장학생		2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관련학과 및 도립대장학생 **[붙임1-2]**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참고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 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붙임2]**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3]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결과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강원대학병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 단 소방관련학과, 구급상황관리사는 강원도 제한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p>※ 항공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 : 23세 이상 40세 이하(1975. 1. 1. ~ 1993 12. 31.)</p> <p>※ 응시사항 연령의 연장</p> <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징병검사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p> <p>※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p>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선발분야	응시자격	취득자격	실무경력	채용계급	인원
소방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등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붙임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	소방사	7
구급분야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의사	2년 이상	소방사	남18 여2
구급상황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 에 관련있는 직무분야 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3년 이상	소방사	5

선발분야		응시자격	취득자격	실무경력	채용계급	인원
리사	전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 에 관련있는 직무분야 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3년 이상	소방교	1
구조	수난(심해)	해군해난구조대「SSU」심해잠수사로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소방사	1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실무(근무)경력이 있는 자		2년 이상		
	일반	<p>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해당분야의 실 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공적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3년 이상	소방사	15
운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 이 있는 자 ※ 군 경력 제외		2년 이상	소방사	15	
특수차량정비	<p>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 정비 기능장,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p> <p>※ 자동차 정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량(펌프차량, 굴절, 고가차량 등)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 -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체 (차량정기검사업무 제외) - 군 복무 기간 중 수송부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 		2년 이상	소방사	3	

선발분야		응시자격	취득자격	실무경력	채용계급	인원
항공	조종	<p>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2년 이상	소방장	3
	도립대 장학생	<p>강원도립대학 소방관련학과 졸업 후 강원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p>		-	소방사	2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2(수) ~ 3. 7(월)	필기시험	3. 21(월)	4. 9(토) 단, 소방항공분야는 4.16(토)	4. 28(목)
	체력시험	4. 28(목)	5. 9(월)	5. 13(금)
△ 취소기간 - 3. 2(수) ~ 3. 14(월)	도핑테스트			별도 공고
※ 토요일, 일요일 제외	신체검사		5. 16(월)	5. 24(화)
	서류전형	5. 24(화)	5. 26(목)	6. 2(목)
	면접시험	6. 2(목)	6. 20(월) ~ 6. 22(수)	6. 28(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 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이상 : 7,000원 지방소방교·소방사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1) 및 시·구·군 관련부서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6]**)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은 2016년 12월 31일 공고된 시험까지 자격증 가점(1%)을 적용함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 1-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1. 일반분야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의 경우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위 이하 (항공분야)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 외의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한다.
2. 위 표 제1호에서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4. 위 표 제2호에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항공분야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 하고, 소방분야는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 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붙임4】**와 같습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 헤로인(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 메타돈(methadone)
- ▶ 모르핀(morphine)
- ▶ 옥시코돈(oxycodone)
- ▶ 옥시몰폰(oxymorphone)
- ▶ 펜타조신(pentazocine)
- ▶ 페티딘(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은 2016년 12월 31일 공고된 시험까지 자격증 가점(1%)을 적용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붙임 기]

동 일 계 통 학 과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연락처		응시자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6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2016. . .

총(학)장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